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8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김태년 · 김영배 · 김준형

김태선 • 권칠승 • 김병기

한민수 • 송기헌 • 정준호

염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2019년 이후 아동수당 금액이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인상하려면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를 "19세"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도"를 "제5항에도"로 한다.

⑤ 아동수당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아동수당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8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8세"를 "19세"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를 "19세"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9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u> 미	지급액) ① <u>19세</u>
만의 아동에게 <u>매월 10만원을</u>	<u>지급한다</u> .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아동수당 금액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아동수
	당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
	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
	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u>⑤</u>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	<u>⑥</u> 제5항에도
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u>8세</u> 미만 아동의 보호자 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④ (생 략)

-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생 략)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u>8세</u>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u>19세</u>
②
<u>19</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1934年日) (5)
10.1
<u>19세</u>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

(6) · (7)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 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 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 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 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 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 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 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 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 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⑥・(10조(시기	5
방법	등)	1	 		
			 	 -19세·	